

2020년도 제26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10. 28.(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김경숙, 박정인,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자(제2020-257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205건(안건번호 제2020-140450호~140890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140450호~140452호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애니메이션의 영상물을 각각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201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최선언

- 오진해 전문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269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최를 선언함.

2. 전차(제2020-257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1호 안전에 대한 회의록 6쪽의 저작물명, 8쪽의
블로그명, 밴드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
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D 위원: 제1호 안전의 해당 부분은 민원인 신고 건으로 비식별 처리
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C, A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2호 안전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
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
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

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은 비식별 처리하
여 공개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회의 부분인
9쪽~15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전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
면서)심의위원님께서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전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
요 권리자는 ‘영국 Sky One’, ‘미국 HBO’, ‘일본 후지TV’, ‘Autodesk
Inc.’, ‘일본 NHK E 테레’, ‘Netflix’, ‘중국 youku’, ‘tvN’, ‘일본
Tokyo MX’, ‘미국 CWTV’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C, A, B, D 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전은 31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205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전번호는 제 2020-140450호~140890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특히 법리에 관해서는 검토보고서의 하급심 판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40450호~140452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네이버 블로거들이 일본 애니메이션 '▲▲▲▲ ▲▲', '▲▲▲▲▲▲', '▲▲▲▲ ▲▲▲▲▲▲'의 영상물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각각 제공한 사안임. 총 게시물 수는 4개임.

(안전번호 제2020-140450호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 984.5화를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하고 있음. 한화 전체 분량인 24분 40초를 제공하고 있음.

(안전번호 제2020-140451호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 147화를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하고 있음. 한화 전체 분량인 24분 10초를 제공하고 있음.

(안전번호 제2020-140452호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 20화를 우리말 자막과 함께 제공하고 있음. 한화 전체 분량인 24분 20초를 제공하고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게시물 수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40450호~140452호는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이 타당함.
- C 위원: 블로그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이므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 D 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임. 가결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40450호~14045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40453호~140890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수는 1,201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출판물, 만화,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

람.

(방송 '나르코스'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40540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방송 '나르코스' 시즌 2를 무료로 제공함. 심의대상 게시물은 1화부터 10화까지 mkv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넷플릭스에서 2016. 9. 2.부터 9. 2.까지 방영하였으며, 와그너 모라, 보이드 홀브룩, 페드로 파스칼 등이 출연하였음. 넷플릭스에서 회원가입 후 시청 가능함.

(방송 '대당여법의'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40614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방송 '대당여법의'를 3,355 포인트에 판매중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1화부터 36화까지 mp4 파일로 제공함. 중국 youku에서 2020. 2. 14.부터 3. 20.까지 방하였으며, 결경, 이정빈, 배자침 등이 출연하였음.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1,650원 대여 가능함.

(방송 '유 퀴즈 온 더 블럭'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제2020-140860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방송 '유 퀴즈 온 더 블럭'을 110 포인트에 판매중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2020. 10. 21에 방영한 77화를 mp4 파일로 제공함. tvN에서 2018. 8. 29.부터 현재까지 방영중이며, 유재석, 조세호 등이 출연하였음.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1,650원 대여 가능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0-140453호~140890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D, A, B, C 위원: 안건번호 제2020-140453호~140890호는 모두 웹하

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40453호~140890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40450호~140890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o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26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26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11. 4.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김경숙

위원 박정인

위원 최현용